

의안 번호	883	<b>【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】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안일자 · 제안자 : 2012. 02. 07(화) 김순점 의원의 6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02. 13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02. 22(수)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시켜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
- 나. 아울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혈 및 장기 기증운동을 활성화시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 적극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을 위한 기본방향, 교육·홍보, 자원과 운용, 분석·평가 등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계획 수립 추진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, 기능, 위원회 구성, 위원회 운영 등 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)
- 마.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 창구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 설치(안 제11조)
- 바. 보건소 진료비 및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(안 제12조)
- 사. 다른 조례(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,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)일부개정(부칙 안 제2조)

### 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**5. 관련법령** :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조례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순점의 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시켜 헌혈 수급안정을 기하고, 새 생명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.운영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 등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것임

### ○ 주요 내용

-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범 구민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.운영 등에 대한 규정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및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예우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음.

### ○ 결 론

-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응급수혈이 필요하며, 뇌사자 또는 사망자 등의 신체일부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나눔으로 사랑의 운동을 확산하고 건강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됨

## **(관련법령)**

### **【 혈액 관리법 】**

제4조(헌혈권장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개정 2004.1.29, 2008.2.29, 2010.1.18>

③ 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4.1.29>

### **【 혈액 관리법 시행령 】**

제2조(헌혈의 권장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혈액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1.29, 2008.2.29, 2010.3.15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05.1.29>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

### **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】**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하고, 장기등의 적출·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

1.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(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
2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

3.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